

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8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 서류전형 합격자

지원코드	채용분야	합격 인원(명)	합격자(응시번호)
인턴01	일반행정	9	강○○(1002), 강○○(1003), 강○○(1004), 박○○(1011), 박○○(1014), 서○○(1015), 신○○(1019), 이○○(1021), 조○○(1028)
인턴02	조사행정	3	김○○(2003), 오○○(2004), 임○○(2006),
인턴03	일반행정_서울	3	김○○(3015), 노○○(3023), 오○○(3038)
인턴04	일반행정_청주	3	김○○(4003), 김○○(4006), 차○○(4018)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개별 연락

2 면접시험 일정

면접일	대상 (서류전형 합격자)	면접시간	대기시간	대기장소
8.27.(목)	인턴02 인턴03 인턴04	14:00~	면접일 13:30까지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2동(국민권익위원회) 1층
	인턴01	15:30~	면접일 15:00까지	

※ **면접 대상별로 일시 및 대기시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**하셔서, 면접자 대기 장소에 대기시간까지 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출입 시 담당자가 동행해야 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기해 주시고, 게이트 내로 미리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(**담당자 미동행 이동금지**)

3

면접시험 준비물

제출방법	대상자	필요 서류
면접일 당일 소지	면접 응시자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청년인턴 DB 제출 (사전제출)	서류전형 합격자 (공통필수)	① 정책제안서 : [붙임1] 서식 - 정책제안서 주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뉴스 등을 참고 ② 공정채용확인서 : [붙임2] 서식 ③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: [붙임3] 서식 ④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: [붙임4] 서식
	서류전형 합격자 (해당자)	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⑥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⑦ 상한 연령 연장하는 경우 증빙서류

※ 필수서류 및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서로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
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,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요망

※ 파일 제목 : '청년인턴 면접시험 서류제출(응시번호-성명)'

4

제출처

- (제출 방법) '26. 8. 24.(월) 18:00까지 청년인재DB 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를 통해 제출

※ 사전 제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
5

최종합격자 발표

○ 2026. 9. 7.(월) 예정

※ 채용 서류 제출 등 채용준비를 거친 후 '26. 9. 14.(월) 채용 예정
(단, 채용준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※ 합격자 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년인재DB 사이트 등에 게재하며,
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
< 유의사항(필독) >

- ◆ 면접시험 준비물 중 사전 제출 서류를 기한 내(8.24, 18:00)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◆ 면접에 불참한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, 응시자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원활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는 응시자는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
- ◆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 사유가 없는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,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◆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6

문의처

○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 044-200-7185)

<붙임1> 정책제안서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)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	성 명		연락처		e-mail	
-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---	--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
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공 정 채 용 확 인 서

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채용 확산과 채용비리 척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니,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친인척이 재직하고(☐있음 / ☐없음)을 확인합니다.
2.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(☐있음 / ☐없음)을 확인합니다.
3.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(☐있음 / ☐없음)을 확인합니다.
4.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(☐있음 / ☐없음)

연번	성명(본인)	친인척 직원				
		성명	소속기관	부서명	직급	본인과의 관계

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·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명 (인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<u>공직자로 재직</u>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☐ 비해당 ☐
2. ' 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☐ 비해당 ☐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☐ 비해당 ☐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☐ 비해당 ☐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(5년 내)	해당 ☐ 비해당 ☐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☐ 비해당 ☐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☐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지 원 자

(서명)

<붙임4>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